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2. 9. 11.

제안자 : 장준호 의원의

1. 수정이유

지방공사사장 후보추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수정함. (안 제6조)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개정안	수정안
제1조~제5조 (생략)	제1조~제5조 (개정안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략)	제6조(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u> 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u>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u> 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11조 (생략)	제7조~제11조 (개정안과 같음)